

##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21년 07월 22일

### 신한미국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9조 (수익권의 분할)	<p>제9조 (수익권의 분할)</p> <p>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p>	<p>제9조 (수익권의 분할)</p> <p>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p>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p>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b>수익증권 발행가액</b>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b>전자등록기관</b>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p>	<p>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b>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b>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b>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b></p>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12조 (수익자명부)	<p>제12조 (수익자명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b>한국예탁결제원</b>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b>한국예탁결제원</b>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b>한국예탁결제원</b>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향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b>한국예탁결제원</b>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b>한국예탁결제원</b>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li> <li>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li> </ul>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b>한국예탁결제원</b>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제12조 (수익자명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b>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b>(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b>전자등록기관</b>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b>전자등록기관</b>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향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b>전자등록기관</b>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b>전자등록기관</b>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li> <li>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li> </ul>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b>전자등록기관</b>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33조 (상환금 등의 지급)	<p>제33조 (상환금 등의 지급)</p> <p>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b>한국예탁결제원</b>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3조 (상환금 등의 지급)</p> <p>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b>전자등록기관</b>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43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p>제43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p> <p>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b>한국예탁결제원</b>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제43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p> <p>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b>전자등록기관</b>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p>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b>한국예탁결제원</b>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b>한국예탁결제원</b>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b>전자등록기관</b>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b>전자등록기관</b>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2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3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5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에 관한 내용 삭제
- 6 상세투자전략 내용 추가
- 7 투자위험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제2부 5.운용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1년 6월 30일)
2.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 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21년 06월 30일)
3.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 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a href="#">한국예탁결제원</a> 에 위탁하여야 하며, <a href="#">한국예탁결제원</a>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규약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a href="#">한국예탁결제원</a>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a href="#">한국예탁결제원</a>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a href="#">한국예탁결제원</a> 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a href="#">전자등록기관</a> 에 위탁하여야 하며, <a href="#">전자등록기관</a>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규약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a href="#">전자등록기관</a>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a href="#">전자등록기관</a>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a href="#">전자등록기관</a> 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기재 :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 류 및 형태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u>&lt;신설&gt;</u>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 : X (해당없음)

5.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에 관한 내용 삭제: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p>제2부 4. 집합투자업자  <b>[업무의 위탁]</b>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는 변경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운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 합니다.          ①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②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p>	<p>제2부 4. 집합투자업자  <b>&lt;삭제&gt;</b></p>
5.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에 관한 내용 삭제: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b>[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b>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경우 관련 모투자신탁)의 해외자산운용은 <b>BNP PARIBAS ASSET MANAGEMENT France</b>가 담당합니다. 운용은 팀운용으로 이루어지며 책임투자운용인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b>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b>  <b>&lt;생략&gt;</b></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b>&lt;삭제&gt;</b></p>
5.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에 관한 내용 삭제: 제4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p>제4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b>[업무의 위탁]</b>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는 변경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운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 합니다.          ①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②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p>	<p>제4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b>&lt;삭제&gt;</b></p>
6. 상세투자전략 내용 추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p>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2) 상세 투자전략</p>	<p>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2) 상세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경제적 혜자를 보유한 업종별 대표 기업과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가치형 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산업별 대표종목을 선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산업 매력도 관점에서 센터 비중을 조정합니다. 상향식 분석을 통해 업종 주요기업 대비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주가지수대비 초과성과를 지향합니다.</p>
7. 투자위험 업데이트: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p>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술이며, 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b>&lt;생략&gt;</b></p>	<p>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술이며, 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b>&lt;업데이트&gt;</b></p>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기재
- 3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에 관한 내용 삭제
- 4 투자위험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1년 6월 30일)
2.「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기재: 투자비용	투자비용 - 표	투자비용 - 표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신설
3.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에 관한 내용 삭제: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경우 관련 모투자신탁)의 해외자산운용은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France가 담당합니다. 운용은 팀운용으로 이루어지며 책임투자운용인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생략>	운용전문인력 <삭제>
3.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에 관한 내용 삭제: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한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shinhanfund.com">www.shinhanfund.com</a> ), (위탁운용사 :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France, 해외자산위탁운용)	집합투자업자 신한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shinhanfund.com">www.shinhanfund.com</a> )
4. 투자위험 업데이트: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 <생략>	주요 투자위험 <업데이트>